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85 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김용민·강유정·한준호

서영석 · 김동아 · 서미화

김 현·장경태·황운하

김용만 · 문정복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년법」 제7조제1항은 '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재범률 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'촉법소년'이라는 명분하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므로 법적 처벌 강화가 속히 필요함.

또한,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전방위적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법제의 현실화가 구축되어야 함.

이에 「소년법」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

및 교사,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(안 제7조 및 제49조). 법률 제 호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거나 교사, 미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거나 교사, 미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	제7조(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		
검찰청으로의 송치) ① 소년부	검찰청으로의 송치) ①		
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			
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			
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			
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			
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			
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			
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			
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		
	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		
	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		
	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		
	를 범하거나 교사, 미수의 경우		
	에도 또한 같다.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49조(검사의 송치) ① (생 략)	제49조(검사의 송치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	2		
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			
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			
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			
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			

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 치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